

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

2024. 12. 17.(화)

물순환안전국

#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물순환안전국

총 2건 건의

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하수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	물재생시설과
2	「물환경보전법」 세차행위 금지 관련 기준 개정 건의	물재생시설과

# 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2. 하수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(물재생시설과, '24.8.7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필수공익사업에 하수도사업 미지정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동조합 파업 시 하수처리시설 운영차질로 악취발생 및 환경오염 등 시민 불편 우려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수도사업을 '필수공익사업'으로 지정 건의</li> </ul> <p><b>※ 필수공익사업 지정시 단체행동권 제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·대체, 도급 또는 하도급 가능</li> <li>- 필수유지업무 협정(결정)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인원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해당업무 수행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71조 제2항</li> </ul>	<p>(고용노동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「물환경보전법」 세차행위 금지 관련 기준 개정 건의 (물재생시설과, '24.8.7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물환경보전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자동차 세차 행위 금지 지역은 하천·호소에 한함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로변에 위치한 일부 식당에서 식당영업과 병행하여 차량·이륜차 등을 세차하는 경우가 있으나, 도로는 세차행위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세차행위를 규제할 수 없음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동차 세차 행위 금지지역에 도로(「도로법」 시행령 제2조제1호)를 포함할 것을 건의함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물환경보전법」 제15조제1항제3호</li> </ul>	<p>(환경부)</p>